광고물관리규정

제정 1985.10.11 규정 제 31호
개정 1986. 4.25 규정 제 46호
1990. 3.29 규정 제 81호
1993.11. 9 규정 제144호
1996. 9.25 규정 제218호
2000. 9. 4 규정 제328호
2001. 4.23 규정 제359호
2002. 7.16 규정 제396호
2006. 1. 9 규정 제533호
2006. 3.29 규정 제557호
2012. 4.13 규정 제699호
2016. 7.12 규정 제812호
2016.11.18 규정 제835호
2017. 4.26 규정 제887호
2017.11. 1 규정 제915호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시설공단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시설물에 부착되거나 부착할 광고물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환경미화와 취급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“광고”라 함은 시설물에 게첨하여 영업하거나 상품을 선전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광고료”라 함은 광고게첨을 위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는 대가를 말한다.
3. “게첨인”이라 함은 광고주 및 광고 대행인을 총칭한다.

제3조(광고의 규격) 광고 종류별 규격은 공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의2(적용) 광고물관리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.
[본조신설 2016.7.12.]

제2장 게첨

제4조(광고물의 게·폐첨) 광고물을 게첨 또는 폐첨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광고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제5조(게첨금지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는 이를 게첨할 수 없다.

1. 관계 법규에 위반될 때
2.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주류, 담배, 과도한 선정성 등으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할 때 (2012.4.13)
3. 통행인 또는 공중에게 불쾌감을 줄 때
4. 사고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
5. (2006.3.29 본호삭제)

제6조(게첨장소) 광고물은 공단이 승인한 장소에 한하여 이를 게첨한다.

제7조(게첨기간) ①광고물의 게첨기간은 광고대행인과의 계약에 의한다.

②광고 게첨기간의 계산은 계약서상의 기산일부터 산정한다.

제8조(게첨승인의 취소등)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광고 게첨기간의 단축 또는 게첨 승인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.

1. 부정한 수단으로 승인을 받았음이 판명될 때
2.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보증금 또는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
3. 승인조건을 위반하여 게첨할 때
4. 건축, 전기, 소방 등 시설물관리에 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(2006.3.29 신설)
5. 개보수공사, 연결통로 설치, 점포공사 등으로 광고물의 게첨장소에 변동이 있는 때 (2006.3.29 신설)
6. 관련법규의 변경이 발생한 때(2006.3.29 신설)

②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에 의한 취소 또는 철회 시 해당 광고물을 즉시 철거토록 조치하여야 하며,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공단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1.1>

제3장 광고대행인

제9조(자격 및 선정) ①공단은 광고의 제작 및 게첨업무를 광고업무 대행인(이하 "광고대행인" 이라 한다)에게 대행토록 할 수 있다. 여기서 광고대행인은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종료(종목)란에 광고업 또는 광고대행업이 명기된 자이어야 한다. <개정 2017.11.1>

② 제1항의 광고대행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광고물의 목적·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7.11.1>

1. (2002.7.16 삭제)
2. 광고대행에 필요한 자력과 신용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
3. <삭 제> (2016.11.18.)

[제목개정 2017.11.1]

제10조(광고대행인의 업무) 광고대행인이 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광고주의 유치
2. 광고의 도안 및 설계
3. 광고의 제작, 게첨 및 철거
4. 광고용 전등의 설비
5. 광고료의 납부
6.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부대되는 업무

제11조(보증금의 예치) ①광고대행인은 계약내용에 따라 일정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공단에 예치하여야 한다.

②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고주에 대하여도 광고의 종류에 따라 제1항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.

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한 보증금은 공단이 일방적으로 다음 각호의 채권회수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.

1. 광고료의 체납액 및 연체료, 제세공과금 등
2. 대집행 비용
3. 손해배상

제12조(대행계약의 해제 등)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광고대행인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.
1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을 경우
2. 법령 및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시정조치를 취하였으나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
3.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이 필요한 경우
4. 기타 관련 법령 또는 계약 내용에 따라 해제 또는 해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

[본조신설 2017.11.1]

제4장 광고료

제13조(광고료의 결정) 광고료는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낙찰가격에 의하고 그 이외의 방법으로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단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[종전 제12조를 제13조로 이동<2017.11.1>]

제14조(광고료의 납입기준) 광고료는 게첨 실적과 관계없이 관계법령 및 계약내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. (개정 2016.7.12.)

[종전 제13조를 제14조로 이동<2017.11.1>]

제15조(광고료의 감면) ① 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광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 (개정 2016.7.12.)
1.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일 때
2. 지하도의 안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을 게첨할 때
3. 시설물을 기증하고 그 시설물의 기증인을 표시할 때
4. 천재지변 또는 공단사정으로 광고물 게첨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
5. 기타 공단에서 특히 반환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제1항의 사유로 기징수한 광고료를 반환코자 할 때에는 게첨일수에 대하여 일할계산 하여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.

[종전 제14조를 제15조로 이동<2017.11.1>]

제16조(광고료의 단수처리) ①광고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백원미만은 절사한다.(2000.9.4)
② 1월 미만의 광고료는 일할 계산한다.('06.1.9)

[종전 제15조를 제16조로 이동<2017.11.1>]

제17조(광고료의 반환)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선납받은 광고료 중 그 해당일 이후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
1.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첨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철회하고 광고물을 철거하였을 때(개정 2016.7.12.)

2. 게첨인의 귀책사유 없이 승인된 광고물의 게첨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

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예치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(개정 2016.7.12.)

1.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게첨승인이 취소되거나 철회된 때(본호개정 2016.7.12.)

2. 게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광고의 게첨을 기간내에 철거한 때

[종전 제16조를 제17조로 이동<2017.11.1>]

제18조(연체료) 연체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등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. (개정 2016.7.12.)

[종전 제17조를 제18조로 이동<2017.11.1>]

제5장 보칙

제19조(광고물 훼손 등에 대한 책임) ①게첨중인 광고물의 훼손 또는 망실 등에 관하여는 공단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(개정 2016.7.12.)

②광고물의 설치하자로 인한 지하도 또는 제3자의 손해는 게첨인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[종전 제18조를 제19조로 이동<2017.11.1>]

제20조(감독) 공단은 광고업무 취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취급인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지시할 수 있으며 관계인으로 하여금 업무취급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[종전 제19조를 제20조로 이동<2017.11.1>]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1985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(86.4.25)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198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('90. 3.29)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('93. 11. 9)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('96. 9. 25)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(2000. 9. 4)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1. 4. 23)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2. 7. 16)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6. 1. 9)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6. 3.29)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2. 4.13)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 7.12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11.18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4.26)(정관 제855호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이 정관의 개정으로 인하여 다른 규정이나 내규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용어는 이 정관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(2017.11.1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